

■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3호서식] <개정 2024. 11. 13.>

인증기관 지정내용

[] 변경신고서

[] 변경승인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변경신고 즉시 변경승인 신청 1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신고인	기관명	지정번호
	대표자	사업자등록번호 (생년월일)
	주 소	전화번호

변경 내용 (※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)	구 분		당 초	변 경
	신 고	[] 인증기관 명칭, 인력 및 대표자 [] 주된 사무소 및 지방 사무소의 소재지		
	승 인 신 청	[] 인증업무의 범위 [] 인증업무규정		

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5항·제35조 및 「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1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(변경승인 신청)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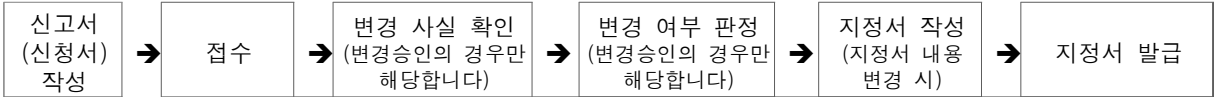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첨부서류	변경신고의 경우: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: 변경내용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
------	---

처리절차

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